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51
----------	-------

발의연월일 : 2025. 6. 16.

발 의 자 : 신장식 · 차규근 · 김준형
서왕진 · 이해민 · 정춘생
김선민 · 김재원 · 민병덕
한창민 · 정혜경 · 황운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수송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율이 충분하지 않아 특수임무유공자를 대상으로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실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함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73조).

법률 제 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중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를 말한다) 및 도시철도공사(「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조금은 이용액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특수임무유공자 중 특수임무부 상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 요한 특수임무부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 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 ----- ----- ----- ----- ----- -,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공 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 공사를 말한다) 및 도시철도공 사(「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 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 ----- -----.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 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 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 다. <후단 신설>	② ----- ----- ----- ----- ----- ----- 이 경우 보조금은 이용액의 10 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

<u>하여야 한다.</u>
